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35호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 | | | |
|-----------------|-----------------------------|-------------|----|
| ○ 공 고 제 1 3 6 호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 자 동 차 관 리 과 | 2 |
| ○ 공 고 제 1 3 7 호 |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 획 예 산 과 | 4 |
| ○ 공 고 제 1 3 8 호 |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 획 예 산 과 | 24 |

고 시

- | | | | |
|-------------|-----------------------------|-----------|----|
| ○ 고 시 제 8 호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논현3지구) 지형도면 고시 | 토 지 정 보 과 | 31 |
|-------------|-----------------------------|-----------|----|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136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처 분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 17. ~ 2025. 2. 3.
3. 공고대상 : 367나6976 외 25대 (별첨)
4.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사실을 공고하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 운행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 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의 지속)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벌칙) 제2의 2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6.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032-453-2827)

2025. 1. 17.

남 동 구 청 장

운행정지자동차 현황 2025년1월분(1차)

구분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등록일	등록사유
1	367나6976	렉서스 ES300h	토**	2025.01.15	소유자 요청
2	80부2651	그랜드스타렉스(GRAND STAREX)	신**	2025.01.15	소유자 요청
3	142무2207	GV80	신**	2025.01.15	소유자 요청
4	166러1245	BMW 740d xDrive	메**	2025.01.15	소유자 요청
5	104더9630	CADILLAC ESCALADE	신**	2025.01.14	소유자 요청
6	229라9323	GV70	신**	2025.01.14	소유자 요청
7	275주8277	Q8 45 TDI quattro	폭**	2025.01.14	소유자 요청
8	100노8450	A6 40 TDI quattro	폭**	2025.01.14	소유자 요청
9	105모5596	A5 Sportback 40 TDI quattro	폭**	2025.01.14	소유자 요청
10	123소5101	E450 4Matic Coupe	메**	2025.01.14	소유자 요청
11	14라9085	Tiguan 2.0 TDI	폭**	2025.01.14	소유자 요청
12	26고7307	싼타페(SANTAFE)	권**	2025.01.10	소유자 요청
13	355우3636	Mercedes-Maybach GLS600 4MATIC	하**	2025.01.10	소유자 요청
14	279더9647	A6 45 TDI quattro	폭**	2025.01.10	소유자 요청
15	349서7400	A8 L 60 TFSI quattro	폭**	2025.01.10	소유자 요청
16	329나6179	A3 40 TFSI	폭**	2025.01.10	소유자 요청
17	233로7532	A6 45 TDI quattro	폭**	2025.01.09	소유자 요청
18	209러5441	Mercedes-Benz C300	신**	2025.01.06	소유자 요청
19	308머3123	S560 4Matic L	메**	2025.01.06	소유자 요청
20	257도5557	마세라티 르반떼 모데나	신**	2025.01.06	소유자 요청
21	703하1365	스타리아 (STARIA)	신**	2025.01.03	소유자 요청
22	388서6626	G90	신**	2025.01.03	소유자 요청
23	345너1194	GV80	신**	2025.01.02	소유자 요청
24	128호2869	셀토스	삼**	2025.01.02	소유자 요청
25	128호2402	QM6	삼**	2025.01.02	소유자 요청
26	111마9822	A6 40 TDI	폭**	2025.01.02	소유자 요청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137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16.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책기획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안 제6조)
- 행정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안 제7조)
- 재정경제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안 제8조)
- 안전교육국 신설과 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안 제9조)
- 복지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안 제10조)
- 환경교통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안 제11조)

3 입법예고기간 : 2025. 1. 16. ~ 1. 20.(4일간)

-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 단축사유 :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라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신속한 정비 실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 ☎ 43-2052, FAX 43-2059

- 남동구 홈페이지(<https://www.namdong.go.kr/main/news/legislation.jsp>)

5.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1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책기획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안 제6조)
- 행정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안 제7조)
- 재정경제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안 제8조)
- 안전교육국 신설과 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안 제9조)
- 복지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안 제10조)
- 환경교통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안 제11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행정절차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국”을 “재정경제국, 안전교육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및 정보통신과”를 “일자리정책과 및 기업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8. 소래지역 중장기 발전 업무

14. 기업지원 및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세무2과, 기업지원과”를 “세무2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12조 앞의 “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의 “제4장 사업소”를 삭제한다.

제18조 앞의 “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을 삭제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 제12조부터 제1

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안전교육국) ① 안전교육국에 안전총괄과,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 식품위생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안전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재해 대비 안전총괄 및 조정
2.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비상대책 수립
4.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7.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8.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9.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10.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12.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사무
13. 식품위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관한 사무
1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15. 정보화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6.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를 “노인정책과, 장애인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보육지원 및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및 식품위생과”를 “교통행정과 및 자동차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책기획국장”을 “안전교육국장”으로 한다.

②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정책기획국장”을 “안전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정책기획국장”을 “안전교육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책기획국장”을 “안전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별표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⑤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1]

[별표]

행정정보의 공표방법(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공 표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개범위	공표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	업무계획(전부)	기획예산과	연1회	2월 중	인터넷 또는 인쇄물
	예산편성현황	기획예산과	연1회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기금운용계획 및 현황	기획예산과	연1회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결산(전부)	재무과	연1회	결산승인일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2.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목록, 지출금액 사용일시	총무과	월1회	10일 이내	인터넷 게재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가·소음 등과 관련한 검사·측정 결과	전 부	환경보전과	월1회	검사결과 후 즉시	인터넷 게재
4. 구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	통계연보	정보통신과	연1회	통계조사 집계 완료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인구통계	총무과	월1회		
	구정현황	총무과	수시		
5.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기획예산과	연1회	2월 중	인터넷 또는 인쇄물
6.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사항	공개청구 내용 및 심의결정사항	인원여권과	수시	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7.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부정불량식품 및 회수공고	식품위생과	수시	공고 후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및 단속현황	환경보전과	수시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8. 노인·아동·장애인복지 시설 현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보육시설 현황	보육정책과	수시	분기1회	인터넷 게재
	사회복지시설 현황	복지정책과 아동복지과 여성가족과	수시	분기1회	인터넷 게재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노인정책과 장애인지원과	수시	분기1회	인터넷 게재
9. 각종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내역 및 잔액	신고포상금 예산 및 잔액	해당부서	월1회	매월말 또는 초	인터넷 게재
10.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법령기준에 따름	해당부서	수시	법령기준에 따름	인터넷 게재

행정정보의 공표방법

구 분		공 표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개범위	공표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11. 중장기 종합계획	중장기종합계획서	기획예산과	연1회	계획 확정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1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사용료조정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 확정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수수료조정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 확정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공공요금조정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 확정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13. 주요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결과물	해당부서	수시	계획 확정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14.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결과 보고서	도로과	수시	진단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15.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	도로과	수시	예산편성 후 1개월 이내 집행 후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1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	안전총괄과	수시	예산편성 후 1개월 이내 집행 후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17.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경쟁 입찰을 통한 공사	공사 및 물품 발주계획 목록	해당부서	수시	15일 이내	인터넷 게재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법령기준에 따름	재무과	수시	계약체결일 다음달 10일 이내	인터넷 게재
19.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심의결과	세무1과	수시	3일 이내	인터넷 게재
20. 구에서 주최한 공청회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해당부서	수시	개최 후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21.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문	해당부서	수시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별지 2]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비고
구청장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명령	「남동구 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8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2.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단,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되 구청장도 발급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4조 같은 법 제30조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구청장 (노인정책과)	1.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2. 기초연금 신청처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구청장 (장애인 지원과)	1. 장애인 등록 · 취소 및 장애 진단사항 확인 2.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청소 행정과)	1.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비고
구청장 (도시 디자인과)	1.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무 2.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봉사단체 운영 3.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지급 업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구청장 (토지 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처리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해제 신고 접수 및 처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홍보 실, 감사실, 정책기획국, 행정국, 재정경제국, 복지국, 환경교통국 및 도시국을 둔다.	제3조(실·국의 설치) ----- ----- ----- <u>재정경제국, 안전교육국</u> ----- -----.
제6조(정책기획국) ① 정책기획국에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u>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및 정보통신과</u> 를 둔다.	제6조(정책기획국) ① ----- ----- 일 <u>자리정책과 및 기업지원과</u> ----- -----.
② 정책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소래 국가어항 개발 및 소래 정비사업 추진</u>	8. <u>소래지역 중장기 발전 업무</u>
9. ~ 13. (생략)	9. ~ 13. (현행과 같음)
14. <u>재난·재해 대비 안전총괄 및 조정</u>	14. <u>기업지원 및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u>
15. <u>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u>	<삭 제>
16. <u>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비상대책 수립 (기존 제16호 삭제 및 제14호에서 이동 2022.10.13.)</u>	<삭 제>
17. <u>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u>	<삭 제>

18. 정보화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등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14.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15.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16.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17.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8. ~ 21. (생략)

제8조(재정경제국) ① 재정경제국에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및 농축수산물과를 둔다.

②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삭 제>

<삭 제>

제7조(행정국) ① -----

----- 민

원여권과-----

-----.

② -----

-----.

1.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4. ~ 17. (현행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와 같음)

제8조(재정경제국) ① -----

----- 세무2과-----

-----.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기업지원 및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7. ~ 9. (생략)

<신설>

<삭제>

6. ~ 8.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제9조(안전교육국) ① 안전교육국에 안전총괄과,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 식품위생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안전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재해 대비 안전총괄 및 조정

2.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비상대책 수립

4.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7.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8.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9.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10.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

제9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 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및 보육정책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생략)

5. ·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10.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

항

11.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사

항

12.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사무

13. 식품위생업소 및 건강기능

식품 관리에 관한 사무

1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15. 정보화사업 전반에 관한 사

항

16.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복지국) ① -----

----- 노인정책과,

장애인지원과-----

-----.

② -----

-----.

1. ~ 3. (현행과 같음)

8. (현행 제4호와 같음)

4. · 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7. (현행과 같음)

6. (현행 제8호와 같음)

<삭제>

<삭제>

항11.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12. (생 략)13. 보육지원 및 보육시설에 관
한 사항 등

제10조(환경교통국) ① 환경교통
국에 청소행정과, 환경보건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
차관리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
다.

② 환경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 략)

17.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사무18. 식품위생업소 및 건강기능
식품 관리에 관한 사무19.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제11조 (생 략)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신 설>제12조 ~ 제14조 (생 략)제4장 사업소<삭 제>

9. (현행 제12호와 같음)

10. 보육지원 및 보육시설에 관
한 사항 등제11조(환경교통국) ① -----

----- 교통행정과 및 자동
차관리과-----

--.

② -----

-----.

1. ~ 16. (현행과 같음)

<삭 제><삭 제><삭 제>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삭 제>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
터 제14조까지와 같음)<삭 제>

<신 설>

제15조 ~ 제17조 (생 략)

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

<신 설>

제18조 ~ 제20조 (생 략)

제4장 사업소

제16조 ~ 제18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

제19조 ~ 제21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138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16.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별표3] 개정
 - (일반직) 본청 4급 : 6명 → 7명 (증 1명)
 - (일반직) 본청 5급 : 37명 → 38명 (증 1명)
 - (일반직) 6급이하 1,253명 → 1,251명 (감 2명)

3 입법예고기간 : 2025. 1. 16 ~ 1. 20.(4일간)

-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 단축사유 :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라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신속한 정비 실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 ☎ 43-202, FAX 43-209)

- 남동구 홈페이지(<https://www.namdong.go.kr/main/news/legislation.jsp>)

5.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1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별표 3] 개정
 - (일반직) 본청 4급 : 6명 → 7명 (증 1명)
 - (일반직) 본청 5급 : 37명 → 38명 (증 1명)
 - (일반직) 6급 이하 1,253명 → 1,251명 (감 2명)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1,335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30	-				
	2급	1	1				
	4급	9	7	1	1		
	5급	69	38	2	8	1	20
	6급 이하 계	1,251	-				
별정직 계		4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5-8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논현3지구)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토지이용 규제 내용(용도 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 17.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 업 명: 「논현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사업위치

- 논현3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1-7번지 일원

○ 사 업 량

- 논현3지구: 146필지/ 88,164.7㎡

2. 사업시행자: 남동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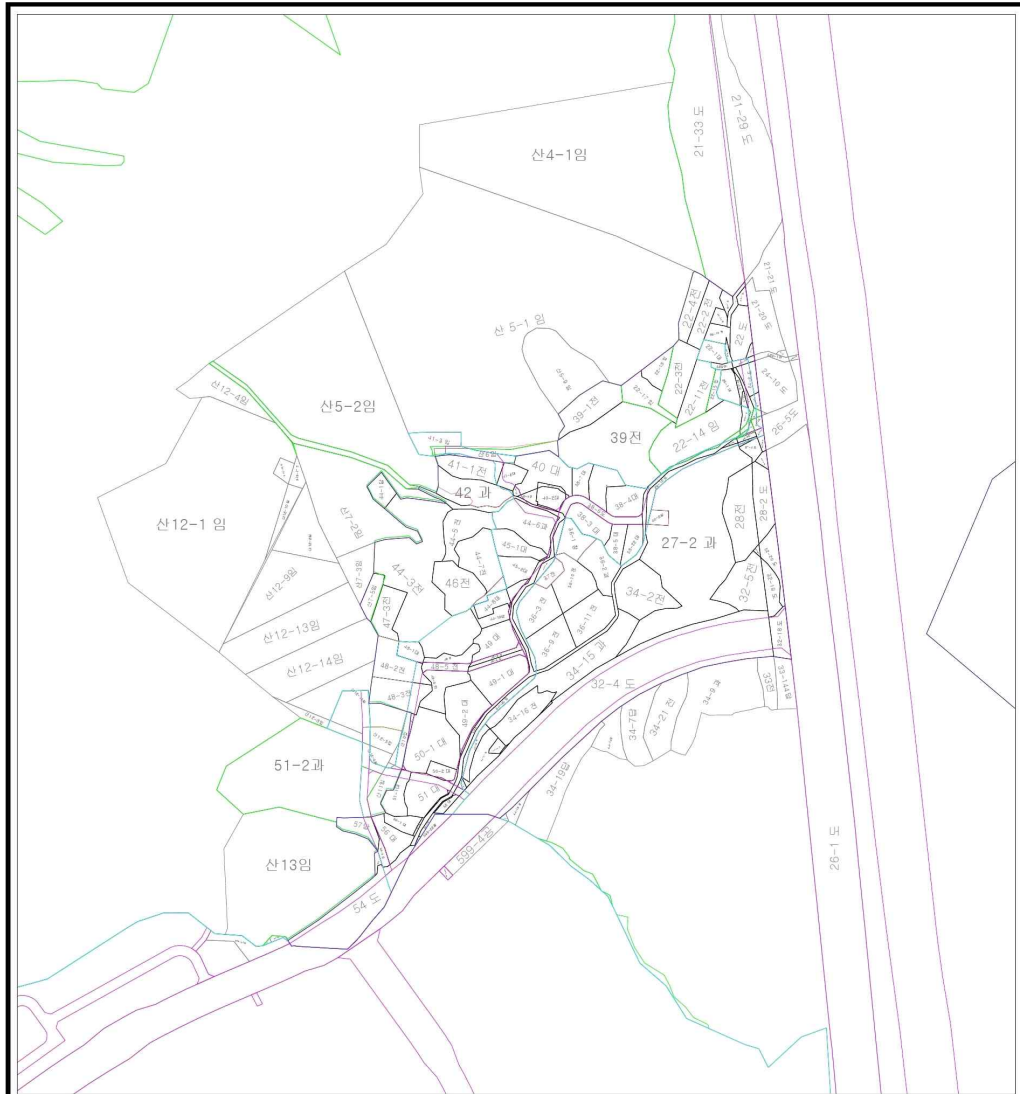
3. 토지이용규제내용(지역·지구 등)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사 항
용도지역·지구	「논현3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조사·등록한 지적도에 부합되도록 선형변경

4. 지형도면: 따로 붙임(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032-453-61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논현3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지형도면 (변경 전)



축척 : 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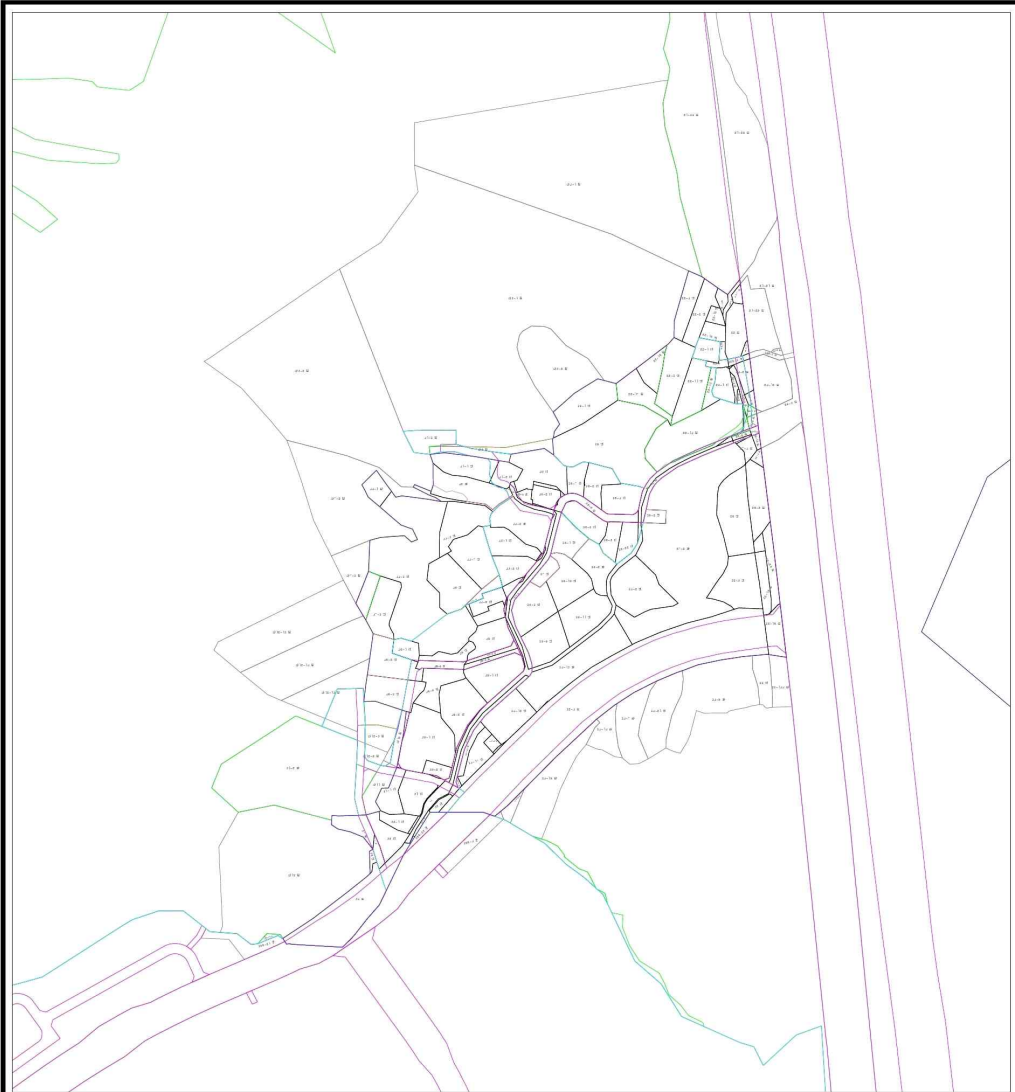
범례

원형	명칭	원형	명칭
	연속지적도(재조사)		구역
	연속지적도(IRRAS)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보관장보완산지
	교통지선		

INDEX



논현3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지형도면 (변경 후)



축척 : N/S

범례

원형	명칭	원형	명칭
	연속지적도(재조사)		구역
	연속지적도(IRRAS)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농보원산지
	교통지선		

INDEX

